대한응급의학회 교육 과정 인준에 관한 규정

2020년 3월

제 1조 (목적)

대한응급의학회(이하 본회)의 교육 과정 인준은 본회 소속 회원들과 응급의료종사자가 국민에게 최상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학 영역에서의 전문 역량 강화를 갖춘 교육과정을 선별하고 인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 2조 (정의)

본회의 교육 과정은 본회에서 인증한 산하 혹은 유관 단체에서 시행하는 교육 과정 중 본회의 교육 과정 인준 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교육 과정으로 한다. 단, 산하 및 유관 단체 소속이 아니더라도 인준을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준위원회의가 판단할 경우, 참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 및 이사회 승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제 3조 (교육 과정 인준 위원회 구성)

본회의 교육 과정 인준위원회는 본회의 학술진흥위원회 이사가 교육 과정 인준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교육위원회, 수련위원회, 고시위원회, 대내협력위원회 이사 및 간사로 평가위원을 구성한다. 단, 해당 위원이 인준 평가의 이해 당사자일 경우 위원장은 별도의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 4조 (교육 과정 인준)

본회의 교육 과정으로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의 다음의 항목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인준을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준위원회의가 판단할 경우, 참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본회의 교육 과정으로 인준할 수 있다.

1. (교육 체계) 교육 과정을 위한 책임자와 구체적인 교육 체계를 별도로 갖추고 있고, 자격을 갖춘 강사진을 보유해야 한다.
2.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본회의 미션, 비전, 핵심가치와 부합하여야 하고, 검증된 근거를 바탕으로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이 마련되어야 하며, 최신 지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교육 운영 및 시행) 인준을 받을 교육 과정은 매년 정기적으로 계획되어 있어야 하고, 년간 1회이상 시행되어야 한다.
4. (교육의 평가 및 개선 시스템)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 체계가 마련되어 있고, 교육 과정의 개선 및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재정) 교육 과정 운영은 재정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6. (교육 자료의 보관) 교육 활동에 관련된 자료(교재, 교육 일정, 일시, 장소, 강사 및 참가자 명단, 피드백 자료 등)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 5조 (인준 절차)

본회의 교육 과정으로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 시행 3개월전에 별도로 마련된 교육 인준 신청서(첨부 문서1)를 인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준위원회는 제출된 신청서와 교육 활동을 평가하여 교육 시작 1개월전까지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한다. 최종 인준은 교육 과정 인준 위원회의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최종 인준은 이사회에 보고하여 이사진 과반수 찬성으로 인준된다.

제 6조 (재인준)

본회의 교육 과정 인준 위원회에서 인준한 교육은 2년마다 재인준을 받도록 한다. 재인준을 원하는 교육 과정은 인준 날로부터 2년내에 교육 인준 신청서를 본회 교육 과정 인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조 (감사)

교육 과정 인준 위원회에서 인준한 교육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교육 과정 인준 위원장의 건의에 따라 본회 교육 과정 인준 위원회는 교육 활동을 조사할 수 있다.

1. 교육의 운영 및 실행이 지극히 부실하여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

2. 교육 활동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을 때

3. 응급의료연구재단의 재정운영사무지원에 따른 회계 업무의 투명성에 관련한 일체의 자료에 대해 재단의 요구에 불응할 때.

제 8조 (감사 조치)

본회 교육 과정 인준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일정기간 내에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

제 9조 (규정의 승인 및 개정)

본 규정의 승인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은 본회의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 과정 인준 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그 밖의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